



대한변호사협회-일본변호사연합회 공동 세미나

인종 차별과 관련한 국제인권규범 적용 사례

일시 | 2021. 11. 24.(수) 16:00 ~ 18:00

형식 | 화상(온라인)

주최 | 대한변호사협회, 일본변호사연합회

대상 | 대한변호사협회-일본변호사연합회 양 기관 전국 회원

언어 | 한 · 일 동시통역

프로그램

* 전체 사회 : 키타무라 사토코(Ms. Satoko Kitamura) 변호사
(일본연 국제인권위원회 위원)

시 간	일 정
16:00	개회
16:00~16:40 (40분)	인종 차별과 관련한 국제인권규범 적용 사례 [한국] ■ 주제발표 : 송진성 변호사(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 3p ■ 토 론 : 모로오카 야스코(Ms. Yasuko Morooka) 변호사 / 29p (도쿄변호사회 외국인인권위원회 위원)
16:40~16:50 (10분)	휴 식
16:50~17:30 (40분)	인종 차별과 관련한 국제인권규범 적용 사례 [일본] ■ 주제발표 : 도요후쿠 세이지(Mr. Seiji Toyohuku) 변호사(교토변호사회) / 39p ■ 토 론 : 이상현 변호사(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위원) / 73p
17:30~18:00 (30분)	질의응답 및 폐회

인종차별과 관련한 국제인권규범 적용 사례 [한국] 人種差別に関わる国際人権規範の適用例 [韓国]

- 원어민 강사를 대상으로 한 위법한 HIV 강제검사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 ネイティブ講師を対象とする違法なHIV強制検査に対する国家賠償請求

2021. 11. 24.

송진성 변호사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ソン・ジンソン 弁護士

(大韓弁協国際人権特別委員会委員)

사건의 배경 1. 언론보도 – 국내 외국인 강사의 탈법행위로 인한 사회적 문제 야기

事件の背景1. メディア報道 – 国内外国人講師の脱法行為による社会問題の惹起

朝鮮日報

인터폴 공개수배 아동 성추행범 한국서 두달간 영어교사

수년간 베트남·캄보디아 등에서 범행
11일 태로 출국... 국내법행 여부 조사

강경희 논설위원 박란희 기자

입력 2007.10.17 00:14 | 수정 2007.10.17 01:49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이 전 세계에 공개 수배한 아동 성추행 용의자가 며칠 전까지도 한국의 한 외국인 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일한 사실이 밝혀졌다.

수년 동안 베트남과 캄보디아 일대에서 소년들을 성추행한 자신의 사진 200여장을 인터넷에 올린 이 용의자는 최근 인터폴과 한국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황급히 한국을 떠났다. 한국 경찰은 그가 국내에서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는지 추적 중이다.

◆한국에서 2개월 동안 영어교사로 근무

경찰청은 16일 "인터폴이 최근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에서 아동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공개 수배한 용의자는 캐나다인 크리스토퍼 폴 닐(32·Christopher Paul Neil)"이라며 "그는 지난 8월부터 2개월 가량 광주광역시외의 한 외국인 학교에서 근무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인터폴로

부터 최근 신원 조

회 요청이 들어와

용의자 이름 등을

통보해줬다. 닐은 지난 11일 인천공항을 통해 태국 방콕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朝鮮日報

인터폴이指名手配のわいせつ犯、韓国で2カ月英語講師

数年間ベトナム、カンボジア等で犯行

11日、タイに出国…国内での犯行有無調査

カン・ギョンヒ論説委員、パク・ランヒ記者

入力 2007.10.17 00:14 修正 2007.10.17 01:49

인터폴(國際刑事警察機構)が全世界に國際指名手配した児童へのわいせつ容疑者が数日前まで韓国の外国人学校で英語講師として勤務していたことが分かった。

数年間、ベトナム・カンボジア一帯で少年たちにわいせつ行為をした自身の写真約 200 枚をネット上にあげていた同容疑者は最近、인터폴と韓国警察の捜査網が狭まったため、急遽韓国から出国した。韓国警察は同容疑者が国内でわいせつ犯罪をおこなっていたか追跡中だ。

◆韓国で2カ月間英語講師として勤務

警察庁は 16 日、「인터폴이最近베トナム、カンボジア等で児童に対するわいせつ行為をおこなった容疑で指名手配した容疑者は、カナダ人のクリストファー・ポール・ニール(32, Christopher Paul Neil)だ」とし、「同容疑者は 8 月から 2 カ月ほど光州広域市の外国人学校に勤務していた」と発表した。

警察庁は、인터폴から最近、身元社会の依頼があり、容疑者の名前等を通報したニール容疑者は今月 11 日、仁川空港からタ-のバンコクに出国したことが確認された。



사건의 배경 2. 법무부 지침 변경(2007. 11.) 事件の背景 2. 法務省指針の変更(2007. 11.)

■ 목적 目的

외국인 회화지도 강사(E-2 비자 소지자)에 대한 자격 검증 강화 및 체류관리 강화
外国人会話指導講師(E-2ビザ所持者)に対する資格検証の強化および在留管理の強化

■ 적용대상 適用対象

회화지도강사(E-2 비자소지자) 등
会話指導講師(E-2ビザ所持者)等

■ 내용 内容

1. 사증발급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1. ビザ発給申請時に犯罪経歴証明書を提出

2. 입국 후 외국인등록 시 채용신체검사서 제출(마약류, HIV검사 결과 포함)
2. 入国後、外国人登録時に採用身体検査書を提出(麻薬類、HIV検査結果を含む)

3. 학력검증 관련 서류 제출
3. 学歴検証関連書類の提出

사건의 배경 2. 법무부 지침 변경(2007. 11.) 事件の背景 2. 法務省指針の変更(2007. 11.)

■ 내용 내용

2. 입국 후 외국인등록 시 채용신체검사서 제출(마약류, HIV검사 결과 포함) 2. 入国後、外国人登録時に採用身体検査書を提出(麻薬類、HIV検査結果を含む)

- ☞ 신체검사서 미제출 또는 마약흡입, 에이즈 감염 시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
- ☞ 身体検査書未提出または麻薬吸引、エイズ感染時には在留許可取り消しと出国命令

※ 지침 개정 이전부터 국내체류중인 E-2비자 소지자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 제출 의무화

※ 指針改正以前から国内在留中のE-2ビザ所持者に対し、最初の在留期間延長申請時に犯罪経歴証明書と健康診断書の提出を義務化

사례 1. R vs. 대한민국(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25207 손해배상(국)) 事例 1. R vs. 大韓民國(ソウル中央地裁2018カダン5125207損害賠償(国))

■ 사건의 개요 事件の概要

2008. 원고(뉴질랜드 국적, 초등학교 원어민보조교사) 입국 후 울산 교육청과 고용계약 체결
HIV 및 마약류 검사결과 제출
原告(ニュージーランド国籍、小学校のネイティブ補助教師) は入国後、蔚山（ウルサン）
教育庁と雇用契約を締結、HIVおよび麻薬類検査結果を提出
2009. 고용계약 갱신을 위해 HIV 및 마약류 검사결과 제출 요구 받음
원고 제출 거부 및 고용계약 종료
雇用契約更新のためHIVおよび麻薬類検査結果の提出要求を受ける
原告が提出拒否、雇用契約終了
2009. 12. 10. 중재절차 개시 (대한상사중재원, 고용계약서상 중재조항)
仲裁手続き開始 (大韓商事仲裁院、雇用契約書上の仲裁条項)
2011. 6. 30. 중재판정부 원고 청구 기각
仲裁判定部、原告の請求を棄却

사례 1. R vs. 대한민국(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25207 손해배상(국)) 事例 1. R vs. 大韓民國(ソウル中央地裁2018カダン5125207損害賠償(国))

■ 사건의 개요 事件の概要

√ 중재절차에서 원고의 청구 내용

√ 仲裁手続きにおける原告の請求内容

1. 유효하게 성립한 2009 – 2010년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1. 有効に成立した2009 – 2010年の雇用契約違反に伴う損害賠償
2. 동의 및 고지 없는 마약류 검사의 시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2. 同意および告知なき麻薬類検査の実施による精神的被害に対する損害賠償

√ 울산교육청의 답변

√ 蔚山教育庁の答弁

- “외국인 교사의 도덕적 양심과 인격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HIV 및 마약 검사를 시행
- 「外国人教師の道徳的良心と人格を評価するための手段」としてHIVと麻薬検査を実施
- 외국인 교사 중 일부가 불법행위에 가담하고 있고, 에이즈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 검사 필요
- 外国人教師中、一部が違法行為に加担しており、エイズ感染の危険性が高いため検査が必要

사례 1. R vs. 대한민국(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25207 손해배상(국)) 事例 1. R vs. 大韓民国(ソウル中央地裁2018カダン5125207損害賠償(国))

■ 사건의 개요 事件の概要

- 2012. 12. 12.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개인진정 접수
国連人種差別撤廃委員会、個人通報受付け
- 2015. 5. 1.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견해 채택
国連人種差別撤廃委員会、見解採択
- 2016. 9. 8.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国家人權委員会の勧告
- 2017. 7. 3. 법무부 채용신체검사서의 HIV 검사 요건 폐지(법무부 고시 2017-116호)
法務省が採用身体検査のHIV検査要件廃止(法務省告示2017-116号)
- 2018. 6. 9. 원고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
原告が国家賠償請求訴訟を提訴
- 2019. 10. 29. 원고 승소 판결
原告勝訴判決

사례 1. R vs. 대한민국(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25207 손해배상(국)) 事例 1. R vs. 大韓民国(ソウル中央地裁2018カダン5125207損害賠償(国))

■ 사건의 개요 事件の概要

√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견해

√ 国連人種差別撤廃委員会の見解

- 인종적으로 한국계가 아닌 외국인 강사에 한정된 의무적 검사 정책은 공중보건이나 그 밖에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되지 않으며, 노동에 대한 권리에 있어서의 평등을 보장할 당사국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 人種的に韓国系ではない外国人講師に限定された義務的検査政策は公衆保健やその他のいかなる理由をもってしても正当化できないもので、労働に対する権利における平等を保障すべき当事国の義務に違反したと判断
-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인의 차별진정에 대해 각하 결정을 한 것과 중재재판부가 인종차별철폐협약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이, 협약 제6조 효과적인 구제에 접근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
- 国家人権委員会が申請人の差別申請に対して却下決定をおこなったことと、仲裁裁判部が人種差別撤廃条約に違反しているか否かについて判断しなかったことは、同条約第6条の効果的な救済に接近する権利を侵害したと判断

사례 1. R vs. 대한민국(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25207 손해배상(국))
事例 1. R vs. 大韓民国(ソウル中央地裁2018カダン5125207損害賠償(国))

■ 사건의 개요 事件の概要

√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견해

√ 国連人種差別撤廃委員会の見解

- 1년 간 임금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여, 정신적 및 실질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 1年間の賃金に対する補償を含め、精神的および実質的損害に対する適切な補償
- 외국인 고용관련 규정 및 정책을 검토하여 인종차별을 야기하거나 지속시키는 효과를 갖는 법규, 규제, 정책 등을 폐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外国人の雇用に関する規定および政策を検討して人種差別を引き起こしたり持続させる効果を持つ法規、規制、政策等を廃止する適切な措置をとること
- 외국인 혐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外国人ヘイトに対する対策づくりをおこなうこと
- 위원회 견해를 당사국의 공식언어로 번역할 것
- 委員会の見解を当事国の公用語に翻訳すること

사례 1. R vs. 대한민국(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25207 손해배상(국)) 事例 1. R vs. 大韓民国(ソウル中央地裁2018カダン5125207損害賠償(国))

■ 사건의 개요 事件の概要

√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 2016年 国家人權委員會の勧告

- E2 비자 소지 외국인에 대한 건강검진제도의 인종차별적 요소를 해소할 것
- E2ビザ所持外国人に対する健康診断制度の人種差別的要素を解消すること
- HIV 검사 결과를 포함한 채용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하는 관련 법령 및 관행을 개선할 것
- HIV検査の結果を含む採用身体検査書の提出を求める関連法令および慣行を改善すること
- 재계약 대상 회화지도 교사에 대해 채용신체검사서 다시 요구하지 않도록 교육청에 대해 지도·감독할 것
- 再契約対象会話講師に対し採用身体検査書を再び要求することがないよう教育庁に対し指導・監督すること
- 원고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을 포함하여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原告に対する適切な補償等を含め人種差別撤廃委員会の勧告事項を履行するための方策を立てること

사례 1. R vs. 대한민국(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25207 손해배상(국)) 事例 1. R vs. 大韓民国(ソウル中央地裁2018カダン5125207損害賠償(国))

■ 소송의 쟁점 訴訟の争点

1. HIV 강제검사의 위법성
HIV強制検査の違法性
2. 공무원의 고의·과실
公務員の故意・過失
3. 상호보증
相互保証
4. 소멸시효
消滅時効

사례 1. R vs. 대한민국(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25207 손해배상(국)) 事例 1. R vs. 大韓民国(ソウル中央地裁2018カダン5125207損害賠償(国))

■ 원고의 주장

1. 헌법 위반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간의 존엄성 침해
 -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 평등권 침해
2. 에이즈예방법 위반
3. 국제인권조약 위반
 - 사회권규약
 - 자유권규약
 - 인종차별철폐협약

■ 原告の主張

1. 憲法違反
 - 私生活の秘密と自由、人間の尊厳性の侵害
 - 職業選択の自由の侵害
 - 平等権の侵害
2. エイズ予防法違反
3. 国際人権条約違反
 - 社会権規約
 - 自由権規約
 - 人種差別撤廃条約

사례 1. R vs. 대한민국(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25207 손해배상(국)) 事例 1. R vs. 大韓民國(ソウル中央地裁2018カダン5125207損害賠償(国))

■ 법원의 판단 裁判所の判断

2. 소멸시효

2. 消滅時効

최소한 원고는 외국인으로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지침에 따라 울산교육청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요구를 한 것을 알지 못하다가, 원고의 진정에 따라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2015. 6. 12. 견해를 외부에 공개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요구에 관한 전모와 구체적인 진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음

最低限、原告は外国人として被告所属公務員らの違法な指針によって蔚山教育庁が原告に対し本件要求をしたことを知らずにいたが、原告の陳情を受けて人種差別撤廃委員会が2015年6月12日の見解を外部に公開したことによって、はじめて本件要求に関する全貌と具体的な真相を把握することができた。

사례 1. R vs. 대한민국(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25207 손해배상(국)) 事例 1. R vs. 大韓民國(ソウル中央地裁2018カダン5125207損害賠償(国))

■ 법원의 판단 裁判所の判断

2. 소멸시효

2. 消滅時効

따라서 원고는 2015. 6. 12.에야 비로소 이 사건 요구 관련 가해자들과 그들이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2009년도 지침을 작성 배포하였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때부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였음.

従って原告は2015年6月12日にやっと本件要求関連の加害者らと彼らが被告所属公務員として職務を執行する過程で2009年度指針を作成配布したことを知ったため、このときから被告に対する損害賠償請求が事実上可能となった。

사례 1. R vs. 대한민국(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25207 손해배상(국)) 事例 1. R vs. 大韓民國(ソウル中央地裁2018カダン5125207損害賠償(国))

■ 법원의 판단 裁判所の判断

2. 소멸시효

2. 消滅時効

원고는 이 사건 요구에 불응하여 계약 갱신을 하지 못하고 출국하는 등 피해를 입었으나, 위법한 지침의 폐지와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국내, 국외에서 법적 노력을 계속해 왔음. 최소한 원고가 결코 권리 위에 잠자고 있지 않았음을 분명함. 원고를 보호할 필요성은 매우 큼

原告は本件要求に応じなかったため契約更新がならず出国するといった被害を被ったが、違法な指針の廃止と自身の権利救済のために国内、国外で法的努力を続けてきた。最低限、原告が決して権利の上に甘んじていたわけではなかったことは明らかである。原告を保護する必要性は非常に大きい。

사례 1. R vs. 대한민국(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25207 손해배상(국)) 事例 1. R vs. 大韓民國(ソウル中央地裁2018カダン5125207損害賠償(国))

■ 법원의 판단 裁判所の判断

2. 소멸시효

2. 消滅時効

피고는 원고의 조치에 대하여 다투기만 할 뿐 현재까지도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그러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被告は原告の措置に対し争うばかりで現在に至るまで責任ある措置を講じていない。そのような被告が消滅時効の完成を主張して債務履行を拒絶することは顕著に不当であり、被告の消滅時効の抗弁は信義誠実の原則に反するもので許容されない。

사례 1. R vs. 대한민국(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25207 손해배상(국)) 事例 1. R vs. 大韓民國(ソウル中央地裁2018カダン5125207損害賠償(国))

■ 평가 評価

- 외국인 회화지도 강사들에게 HIV 검사를 강제한 정책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
外国人会話指導講師にHIV検査を強制した政策の違法性を確認し、国家賠償責任を認定
-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결정 공개일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로 삼음
人種差別撤廃委員会の決定公開日を損害賠償請求権の消滅時効起算日とみなした
- 정부의 소멸시효 항변을 신의칙 위반으로 판단
政府の消滅時効の抗弁を信義則違反と判断
- 조약기구 권고의 효력에 대한 명시적 판단 부재
条約機関の勧告の効力に対する明示的な判断の不在
- 외국인 강사들에 대한 HIV 검사 강제 정책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
外国人講師に対するHIV検査強制政策の目的の正当性を認定

사례 2. A vs. 대한민국(서울중앙지방법원) 事例 2. A vs. 大韓民國(ソウル中央地裁)

■ 사건의 개요 事件の概要

- 2006. 3. 한국에 입국 후 국내 한 사립대학 영어강사로 채용됨
韓国に入国後、国内のある私立大学に英語講師として採用される
- 2007. 12. 5. 법무부 지침 개정
法務省指針の改定
- 2009. 2. 27.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
출입국 공무원 원고에게 마약류 및 HIV 검사결과 포함된 건강확인서 제출 요구
在留期間延長許可申請
出入国公務員が原告に麻薬類およびHIV検査結果を含む健康確認書の提出を要求
- 2009. 3. 25. 원고 건강확인서 제출 거부
原告が健康確認書の提出を拒否
- 2009. 7. 원고 사직서 제출 후 자진 출국
原告が辞表提出後に自ら出国

사례 2. A vs. 대한민국(서울중앙지방법원) 事例 2. A vs. 大韓民國(ソウル中央地裁)

■ 사건의 개요 事件の概要

- | | |
|--------------|---------------------------------|
| 2009. 7. | 헌법소원 심판청구
憲法訴願審判請求 |
| 2011. 10. 5. |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憲法裁判所の却下決定 |
| 2013. 7. 7. | 자유권규약위원회 진정
自由権規約委員会に陳情 |
| 2018. 7. 12. | 자유권규약위원회 견해 채택
自由権規約委員会が見解採択 |

사례 2. A vs. 대한민국(서울중앙지방법원) 事例 2. A vs. 大韓民國(ソウル中央地裁)

■ 사건의 개요 事件の概要

√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 憲法裁判所の却下決定

- 원고가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각 출석요구와 이 사건 공문발송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으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5 건강확인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와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 청구 각하.
- 原告が審判請求の対象と見なした本件各出席要求と本件公文発送行為は、憲法訴願審判の対象となる公権力の行使と見なすことができず、出入国管理法施行規則第76条第1項別表5健康確認書部分については原告との法的関連性を備えていないという理由で原告の審判請求を却下。

사례 2. A vs. 대한민국(서울중앙지방법원) 事例 2. A vs. 大韓民国(ソウル中央地裁)

■ 사건의 개요 事件の概要

√ 자유권규약위원회 견해

√ 自由権規約委員会の見解

- 피고 대한민국이 자유권규약 제17조가 보장하는 원고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와 제26조 차별 없이 대우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결정
- 被告大韓民国が自由権規約第17条が保障する原告の私生活に対する権利と第26条の差別なき待遇を受ける権利を侵害したと決定
- 원고에게 적절한 배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결정
- 原告に適切な賠償を提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決定

사례 2. A vs. 대한민국(서울중앙지방법원) 事例 2. A vs. 大韓民國(ソウル中央地裁)

■ 사건의 개요 事件の概要

2020. 12. 21.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
国家賠償請求訴訟を提訴

2021. 8. 19. 원고 기각 판결
原告に棄却判決

- 현재 항소심 진행 중
現在、控訴審係属中

사례 2. A vs. 대한민국(서울중앙지방법원) 事例 2. A vs. 大韓民國(ソウル中央地裁)

■ 원고의 주장

1. 헌법 위반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 침해
 - 법률유보원칙 위반
 - 과잉금지원칙 위배
 - 평등권 침해
2. 에이즈예방법 위반
3. 국제인권조약 위반
 - 사회권규약
 - 자유권규약
 - 인종차별철폐협약

■ 原告の主張

1. 憲法違反
 - 私生活の秘密と自由等の基本権侵害
 - 法律留保原則違反
 - 過剰禁止原則違反
 - 平等権の侵害
2. エイズ予防法違反
3. 国際人権条約違反
 - 社会権規約
 - 自由権規約
 - 人種差別撤廃条約

사례 2. A vs. 대한민국(서울중앙지방법원)

事例 2. A vs. 大韓民国(ソウル中央地裁)

■ 법원의 판단 裁判所の判断

1. 헌법, 출입국관리법, 에이즈예방법,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으로부터 원고에게 HIV검사 및 마약 검사를 받지 않은 채 피고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음

1. 憲法、出入国管理法、エイズ予防法、自由権規約、社会権規約、人種差別撤廃条約から原告にHIV検査および麻薬検査を受けないまま被告から在留期間延長許可を受ける権利が導き出されるとは見なせない。

2. 자유권규약위원회 견해의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음

2. 自由権規約委員会の見解に法的拘束力が認められない。

3.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요구행위는 구 출입국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이 사건 지침에 따른 것으로 적법함.

3. 被告の原告に対する本件要求行為は旧出入国管理法および同法施行令、本件指針に則ったもので適法である。

사례 2. A vs. 대한민국(서울중앙지방법원) 事例 2. A vs. 大韓民国(ソウル中央地裁)

■ 평가 評價

- 적법하게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인 원고에게는 헌법 및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권리가 인정 됨
- 適法に入国して国内に在留中の外国人である原告には、憲法および国際人権条約に基づく権利が認められる。
- 대한민국은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자유권위원회 견해를 존중할 국제법상 의무를 지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견해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만 실시하고 견해와 배치되는 판결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바, 이는 헌법 제6조 1항 국제법 존중주의에 위반되는 위법한 판결임
- 大韓民国は自由権規約の選択議定書に加盟した当事国として、自由権規約委員会の見解를尊重すべき国際法上の義務を負っ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原審は見解가法的拘束力を持たないとのみ說示し、見解に反する判決의理由를具體的に說示していない。これは憲法第6条1項의国際法尊重主義に反する違法は判決である。

사례 2. A vs. 대한민국(서울중앙지방법원) 事例 2. A vs. 大韓民國(ソウル中央地裁)

■ 평가 評価

◦ 이 사건 지침이 위법하다는 것은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각 견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을 통해 수 차례 확인된 바 있으며, 법무부 역시 위와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2017년 문제의 지침을 폐지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만 근거하여 이 사건 지침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함.

◦本件指針が違法であることについては人種差別撤廃委員会、自由権規約委員会の各見解、国家人権委員会の勧告等を通して数度にわたり確認されているとおりであり、法務省も上記のような指摘を受け入れて2017年に問題の指針を廃止し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出入国管理法第11条第1項第1号にのみ基づいて本件指針が違法ではないと判断した。

韓国の適用例の発表に対するコメント 한국의 적용 사례 발표에 대한 코멘트

2021.11.24

弁護士 師岡 康子
모로오카 야스코 변호사

(在日コリアン女性・中学生に対するヘイトスピーチ事件の刑事告訴及び民事訴訟代理人。「ヘイト・スピーチとは何か」著者)
(재일 코리안 여성・중학생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 사건의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대리인. '헤이트 스피치란 무엇인가' 저자)

日本の人種差別撤廃法制度との違い 일본의 인종차별철폐법제도와 다른점

包括的な人種差別禁止法が未整備なのは共通だが、日本には国内人権機関が未だ設置されておらず、個人通報制度も導入していない。

両制度を実現し、先行している韓国で、弁護士が具体的に裁判にどのように活用し、その結果、どのように機能しているかを学ぶことは大変有意義であり、日本での法整備のために活用したい。

このような貴重な報告をしていただいた韓国の弁護士に敬意を表し、感謝する。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정비되지 않은 점은 동일하지만, 일본에서는 국내 인권기구가 아직도 설치되지 않았고, 개인통보제도도 도입되지 않았다.

두 제도를 실현하여 선행하고 있는 한국에서,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재판에 어떻게 활용하고, 그 결과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배우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것이며, 일본에서 법을 정비하 위해 활용하고 싶다.

이러한 귀중한 보고를 해주신 한국 변호사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감사한다.

事例 1 へのコメント (2015年6月CERDの見解の意義) 사례1에 대한 코멘트(2015년 6월 CERD의 견해 의의)

- 「仲裁裁判部が人種差別撤廃条約に違反しているかどうか否かについて判断しなかったこと」自体がICERD第6条の定める効果的な救済に接近する権利の侵害と判断したとある。
- '중재재판부가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 자체가 ICERD 제6조가 규정하는 효과적인 구제에 접근할 권리의 침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 日本でも裁判所は、原告が国際人権諸条約違反と主張しても、多くの場合、とりわけ公的な差別の場合、条約違反か否かは判断がなされない。当職の関わった朝鮮学校生徒の高校無償化制度からの排除の違法性を争った裁判においても、その判断はほとんど回避された。
- 일본에서도 법원은 원고가 국제인권규범 위반이라고 주장해도 대부분의 경우, 특히 공적 차별인 경우, 규범 위반인지 아닌지는 판단하지 않는다. 본 변호인이 관여한 고등학교 무상화제도에서 조선학교 학생들이 배제된 불법성에 관한 재판에 있어서도 그 판단은 거의 회피되었다.

事例 1 へのコメント（2015年6月CERDの見解の意義） 사례1에 대한 코멘트(2015년 6월 CERD의 견해 의의)

- このような見解がだされれば、裁判所は判断をせざるを得ないこととなり、国際人権基準が国内で適用されることに大きく寄与する。個人通報制度の有効性が明らか。
- 이러한 견해가 나오게 되면 법원은 판단할 수 밖에 없고 국제인권기준이 국내에서 적용되는 것에 크게 기여한다. 개인통보제도의 유효성이 분명하다.

事例1についての質問①

사례1에 대한 질문①

個人通報制度は、国内法の「他の利用し得る国内的な救済措置を尽く」していることが受理の条件とされているが（人種差別撤廃条約第14条第2項）、本件では、原告は個人通報制度への通報の前には仲裁手続きしか行っていないように思われるが、その点はどのようにして要件がクリアされたのか。

개인통보제도는 국내법의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국내적인 구제조치를 다할 것’이 수리 조건이 되어 있는데(인종차별철폐협약 제14조 2항), 본 건에서 원고는 개인통보제도의 통보 전에는 중재절차만 한 상태로 보이는데, 그 점은 요건이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事例 1 についての質問②

사례1에 대한 질문②

2019年地裁判決は、CERD見解公表を消滅時効の起算点としており、個人通報制度が韓国の裁判制度の中で公的に位置づけられ、差別の被害者を救済する方向で活用されているのは評価できる。

2019년 지법판결은 CERD견해 공표를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하고 있어, 개인통보제도가 한국의 재판제도 안에서 공적으로 자리매김하여 차별 받은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しかし、「裁判所の判断」及びそれに対する「評価」によると、判決では、人種差別撤廃条約違反かどうかの判断、また、CERDの勧告の内容及び効力に対する判断を直接的にはしていないということと思われるが、そのような理解でよいのか。

그러나 '법원의 판단' 및 그에 대한 '평가'에 의하면, 판결에서는 인종차별철폐협약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그리고 CERD의 권고 내용 및 효력에 대한 판단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가?

事例 2 に対するコメント（地裁判決） 사례2에 대한 코멘트(지방법원 판결)

ソウル中央地裁が、自由権規約委員会の見解について、法的拘束力をもたないとして切り捨てている点は、国際人権条約を活用していく障害となる大きな問題である。

日本政府は2013年6月、拷問禁止委員会の勧告について、閣議決定で、「法的拘束力はない」「従う義務なし」という答弁書を閣議決定しており、同様の問題がある。

控訴審判決でこの点について争っているとのことで、よい判決が出ることを期待したい。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에 대해서 법적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잘라버린 점은 국제인권조약을 앞으로 활용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큰 문제이다.

일본 정부는 2013년 6월,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법적 구속력은 없다’, ‘따를 의무 없음’ 이라는 답변서를 각의결정하여 같은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항소심에서 이 점에 대해 다투고 있다고 하니, 좋은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

事例 2 に対する質問 사례2에 대한 질문

事例2は、自由権規約委員会が2013年7月に通報を受理してから見解がだされるまで5年間かかっており、事例 1 の人種差別撤廃条約の処理と比べても2倍となっている。長くかかったのは何か特別な理由があるのか。

事例 1 では人種差別撤廃委員会、事例 2 では自由権規約委員会が利用されているが、それぞれを選択した理由は何か。両者の違い、メリットとデメリットがあれば教えてほしい。

사례2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2013년 7월에 통보를 수리하고 나서 견해를 내기까지 5년이 걸렸고, 사례1의 인종차별철폐협약의 처리와 비교해도 2배 차이가 난다. 오랜 시간이 걸린 점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

사례1에서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사례2에서는 자유권규약위원회를 활용하고 있는데, 각각 다른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양측의 차이점,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설명 바란다.

(参考) 日本で差別的取扱いに関して人種差別撤廃条約が使われた判例の紹介

(참고)일본에서 차별적인 취급에 관한 인종차별철폐협약이 사용된 판례 소개

- ・日本は1995年に加入申請し、1996年に発効。
- ・静岡県の宝石店にブラジル人が入店したところ、店主が「外国人お断り」とのポスターを示し、店から退去させた事例。1999年10月12日に静岡地裁浜松支部で、人種差別撤廃条約が不法行為の解釈基準として用いられ、損害賠償として150万円が認められた（確定）。
- ・ 일본은 1995년에 가입 신청하고 1996년에 발효.
- ・ 시즈오카현의 보석상에서 브라질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점주가 '외국인 사절'이라고 쓰여진 포스터를 제시하며 가게에서 쫓은 사례. 1999년 10월 12일 시즈오카지방법원 하마마쓰지원에서 인종차별철폐협약이 위법행위 해석 기준으로 채택되어 손해배상으로 150만엔이 인정됨(확정).

(参考) 日本で差別的取扱いに関して人種差別撤廃条約が使われた判例の紹介

(참고)일본에서 차별적인 취급에 관한 인종차별철폐협약이 사용된 판례 소개

・北海道の公衆浴場に外国人及び外国ルーツの人が入ろうとしたが外国人として拒否された事例。2002年11月11日に札幌地裁、2004年9月16日に札幌高裁で、人種差別撤廃条約が不法行為の解釈基準として用いられ、損害賠償として1人100万円が認められた（確定）。

홋카이도의 공중목욕탕에서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외국인이라고 거부된 사례. 2002년 11월 11일에 삿포로지방법원, 2004년 9월 16일에 삿포로고등법원에서 인종차별철폐협약이 불법행위의 해석 기준으로 쓰여져 손해배상으로 한 사람당 100만엔이 인정됨(확정).

在特会関連訴訟と
国際人権法
재특회 관련 소송과
국제인권법

京都弁護士会 豊福誠二

(京都朝鮮学校襲撃事件、徳島県教組襲撃事件原告代理人)

(同刑事事件告訴代理人等)

교토변호사회 도요후쿠 세이지

(교토조선학교 습격사건, 도쿠시마현 교조 습격사건 원고대리인)

(동 형사사건 고소대리인 등)

本報告で取り上げる判例

京都事件民事第1審

京都地方裁判所 平成22年(ワ)第2655号 街頭宣伝差止め等請求事件 平成25年10月7日

判例時報 2208号 74頁

ジュリスト 1466号 26頁

ジュリスト 1466号 292頁

国際人権(国際人権法学会年報) 25号 112頁

山口経済学雑誌 62巻 4号 321頁

京都事件民事控訴審

大阪高等裁判所 平成25年(ネ)第3235号 街頭宣伝差止め等請求控訴事件 平成26年7月8日

判例時報 2232号 34頁

ジュリスト 1479号 288頁

別冊ジュリスト 241号 156頁

福岡大学法学論叢 60巻 1号 103頁

法学セミナー 59巻 12号 106頁

이번 보고에서 다루는 판례

교토 사건 민사 제1심

교토 지방재판소 헤이세이22(2010)년(가) 제2655호 가
두선전금지 등 청구사건 헤이세이25(2013)년 10월 7일

판례시보 2208호 P.74

쥬리스트 1466호 P.26

쥬리스트 1466호 P.292

국제인권(국제인권법학회보) 25호 P.112

야마구치경제학잡지 62권4호 P.321

교토사건 민사 항소심

오사카고등재판소 헤이세이25(2013)년(나) 제3235호 가
두선전금지 등 청구 항소사건 헤이세이26(2014)년 7월 8일

판례시보 2232호 P.34

쥬리스트 1479호 P.288

별책 쥬리스트 241호 P.156

후쿠오카대학 법학논총 60권1호 P.103

법학세미나 59권 12호 P.106

徳島事件民事第1審

徳島地方裁判所 平成25年(ワ)第282号 損害賠償
請求事件 平成27年3月27日
LLI/DB 判例秘書登載

徳島事件民事控訴審

高松高等裁判所 平成27年(ネ)第144号、平成27年(ネ)第254号 損害賠償請求控訴, 同附帶控訴事件 平成28年4月25日
ジュリスト1518号296頁

京都事件・徳島事件刑事事件

京都地方裁判所 平成22年(わ)第1257号、平成22年(わ)第1641号 威力業務妨害, 侮辱, 器物損壊, 建造物侵入被告事件 平成23年4月21日
LLI/DB 判例秘書登載

2017年の名誉毀損事件

京都地方裁判所 平成30年(わ)第327号 名誉毀損
令和元年11月29日
LLI/DB 判例秘書登載
大阪高等裁判所 令和2年(う)第46号 名誉毀損 令和2年9月14日
LLI/DB 判例秘書登載

도쿠시마사건 민사 제1심

도쿠시마 지방재판소 헤이세이25(2013)년 (가) 제282호
손해배상청구사건 헤이세이27(2015)년 3월 27일
LLI/DB 판례비서 등재

도쿠시마사건 민사 항소심

다카마쓰 고등재판소 헤이세이27(2015)년 (나) 제144호, 헤이세이27(2015)년 (나) 제254호 손해배상청구 항소, 동 부대항소 사건 헤이세이28(2016)년 4월 25일
쥬리스트 1518호 P.296

교토사건・도쿠시마사건 형사사건

교토 지방재판소 헤이세이22(2010)년 (와) 제1257호, 헤이세이22(2010)년 (와) 제1641호 위력업무 방해, 모욕, 기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사건 헤이세이23(2011)년 4월 21일
LLI/DB 판례비서 등재

2017년 명예훼손 사건

교토 지방재판소 헤이세이30(2018)년 (와) 제327호 명예훼손 레이와 원년(2019) 11월 29일
LLI/DB 판례비서 등재
오사카 고등재판소 레이와 2(2020)년 (로) 제46호 명예훼손 레이와2(2020)년 9월 14일
LLI/DB 판례비서 등재

京都事件第1審判決・国際人権法 교토사건 제1심 판결 ・ 국제인권법

「人種差別撤廃条約は、「人種差別」について「人種，皮膚の色，世系又は民族的若しくは種族的出身に基づくあらゆる区別，排除，制限又は優先であって，政治的，経済的，社会的，文化的その他のあらゆる公的生活の分野における平等の立場での人権及び基本的自由を認識し，享有し又は行使することを妨げ又は害する目的又は効果を有するもの」と定義し（1条1項），締結国に「人種差別を非難し…あらゆる形態の人種差別を撤廃する政策…をすべての適当な方法により遅滞なくとる」ことを求め，「すべての適当な方法（状況により必要とされるときは，立法を含む。）により，いかなる個人，集団又は団体による人種差別も禁止し，終了させる」ことを求めている（2条1項柱書き及びd）。」

“인종차별철폐 협약은 ‘인종차별’에 대해 ‘인종, 피부색, 혈통 또는 민족이나 종족적 기원에 근거한 어떠한 구별, 배제,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1조 1항), 계약국에 ‘인종차별을 규탄하며…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철폐하는 정책 …을 모든 적절한 방법(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는 입법을 포함)으로 모든 개인, 집단 또는 단체에 의한 인종차별도 금지하고, 종료시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2조1항 주서(柱書) 및 d).”

京都事件第1審判決・国際人権法 교토사건 제1심 판결・국제인권법

(つづき) 「さらに、人種差別撤廃条約の締結国は、その「管轄の下にあるすべての者に対し、裁判所…を通じて…あらゆる人種差別の行為に対する効果的な保護及び救済措置を確保し、並びにその差別の結果として被ったあらゆる損害に対し、公正かつ適正な賠償又は救済を…求める権利を確保する」ことをも求められる（6条）。

このように、人種差別撤廃条約2条1項は、締結国に対し、人種差別を禁止し終了させる措置を求めているし、人種差別撤廃条約6条は、締結国に対し、裁判所を通じて、人種差別に対する効果的な救済措置を確保するよう求めている。これらは、締結国に対し、国家として国際法上の義務を負わせるというにとどまらず、締結国の裁判所に対し、その名宛人として直接に義務を負わせる規定であると解される。

このことから、わが国の裁判所は、人種差別撤廃条約上、法律を同条約の定めに適合するように解釈する責務を負うものというべきである。」

(이어서) “그리고 인종차별철폐협약의 체결국은 그 ‘관할 하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법원...을 통해...모든 인종차별 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보호 및 구제 조치를 확보하며, 또한 그러한 차별의 결과로 입은 모든 피해에 대해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 또는 구제를...요구하는 권리를 확보할’것도 요청된다(6조).

이처럼 인종차별철폐협약 2조 1항은 체결국에 대해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종료시키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인종차별철폐협약 6조는 체결국에 대해 법원을 통해 인종차별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체결국에 대해 국가로서 국제법상의 의무를 지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체결국의 법원에 대해 그 수신인으로서 직접적으로 의무를 지게 하는 규정으로 해석된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의 법원은 인종차별철폐협약상, 법률을 동 협약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해석할 책무를 진다고 해야 한다”

京都事件第1審判決・国際人権法 교토사건 제1심 판결・국제인권법

(つづき) 「このように、人種差別撤廃条約 2 条 1 項は、締結国に対し、人種差別を禁止し終了させる措置を求めているし、人種差別撤廃条約 6 条は、締結国に対し、裁判所を通じて、人種差別に対する効果的な救済措置を確保するよう求めている。これらは、締結国に対し、国家として国際法上の義務を負わせるというにとどまらず、締結国の裁判所に対し、その名宛人として直接に義務を負わせる規定であると解される。

このことから、わが国の裁判所は、人種差別撤廃条約上、法律を同条約の定めに適合するように解釈する責務を負うものというべきである。」

(変更された)

(이어서) “이 같이 인종차별철폐협약 2조 1항은 체약국에 대해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종료시키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인종차별철폐협약 6조는 체약국에 대해 법원을 통해 인종차별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조치를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체약국에 대해 국가로서 국제법상의 의무를 지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체약국의 법원에 대해 수신인으로서 직접 의무를 지게 하는 규정이라고 해석된다.

이로부터 우리나라의 법원은 인종차별철폐협약상 법률을 동 협약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해석할 책무를 진다고 해야 한다.”

(변경되었다)

京都事件第1審判決・高額になる理由

교토사건 제1심 판결 · 고액이 된 이유

「無形損害を金銭評価するに際しては，被害の深刻さや侵害行為の違法性の大きさが考慮される。

ところで，甲第155号証によれば，日本政府は，昭和63年（ママ），人種差別撤廃条約に基づき設立された国連の人種差別撤廃委員会において，日本の刑事法廷が「人種的動機（racial motivation）」を考慮しないのかとの質問に対し，「レイシズムの事件においては，裁判官がしばしばその悪意の観点から参照し，それが量刑の重さに反映される」と答弁したこと，これを受けて人種差別撤廃委員会は，日本政府に対し「憎悪的及びレイシズム的表明に対処する追加的な措置，とりわけ…関連する憲法，民法，刑法の規定を効果的に実施することを確保すること」を求めた事実が認められる。すなわち，刑事事件の量刑の場面では，犯罪の動機が人種差別にあったことは量刑を加重させる要因となるのであって，人種差別撤廃条約が法の解釈適用に直接的に影響することは当然のこととして承認されている。

“무형 손해를 금전 평가할 때는 피해의 심각성과 침해행위의 위법성의 크기를 고려한다.

그런데 갑제155호증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쇼와63(1988)년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근거해 설립된 유엔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일본의 형사 법정이 ‘인종적 동기(racial motivation) 를 고려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레이시즘 사건에서는 재판관이 종종 그 악의의 관점에서 참조해 형량의 무게에 반영된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대해 ‘증오적 혹은 레이시즘적 표명에 대처하는 추가적 조치, 특히… 관련된 헌법, 민법, 형법 규정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확보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형사사건의 양형면에서는 범죄의 동기가 인종차별에 있었다는 것은 양형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며, 인종차별철폐협약이 법의 해석 적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승인되고 있다.

京都事件第1審判決・高額になる理由

교토사건 제1심 판결・고액이 된 이유

同様に、名譽毀損等の不法行為が同時に人種差別にも該当する場合、あるいは不法行為が人種差別を動機としている場合も、人種差別撤廃条約が民事法の解釈適用に直接的に影響し、無形損害の認定を加重させる要因となることを否定することはできない。

また、前記のとおり、原告に対する業務妨害や名譽毀損が人種差別として行われた本件の場合、わが国の裁判所に対し、人種差別撤廃条約 2 条 1 項及び 6 条から、同条約の定めに適合する法の解釈適用が義務付けられる結果、裁判所が行う無形損害の金銭評価についても高額なものとならざるを得ない」(変更された)

마찬가지로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가 동시에 인종차별에도 해당될 경우, 혹은 불법행위가 인종차별을 동기로 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종차별철폐협약이 민사법의 해석 적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무형 손해의 인정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이 인종차별로서 일어난 본건의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 대해 인종차별철폐협약 2조 1항 및 6조에서 동 조약의 규정에 적합한 법의 해석 적용이 의무화된 결과, 법원이 시행하는 무형 손해의 금전 평가에 대해서도 고액이 될 수 밖에 없다”(변경되었다)

京都事件第1審判決・判決の特色 (LIC)

교토 사건 제1심 판결 · 판결의 특색(LIC)

もう一つの特色は、人種差別撤廃条約が法律（民法709条）の解釈や損害賠償額の認定に影響を与えることを認めた点にある。条約が国家間の取り決めであることはいうまでもないが、国内法体系との関連においては、いわゆる非自動執行型条約と、自動執行型条約があるといわれてきた。どのような基準によって両者を区別すべきかは必ずしも明らかでないが、自動執行型条約というための基準として、その内容が国家間の権利義務でなく、個人の権利義務について定められたものであって、権利義務の発生要件、効果、手続等が条約に明確、詳細に定められており、さらにこれを補完、具体化する法令を必要とせず国内における裁判規範として執行可能なものであること、締結国がこれを直接国内執行可能なものとする意思を有していることが必要であるとする判例がある

또 다른 특색은 인종차별철폐협약이 법률(민법709조)의 해석이나 손해배상액 인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정한 점이다. 협약이 국가 간의 결정사항임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국내법체계와의 관련해서는 이른바 비자동집행형협약과 자동집행형협약이 있다고 알려져 왔다. 어떤 기준에 따라 양자를 구별할 것인지는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지만, 자동집행형협약이라고 하기 위한 기준으로 그 내용이 국가 간의 권리의무가 아니라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정해진 것으로, 권리의무의 발생 요건, 효과, 절차 등이 협약에 명확히, 상세히 정해져 있으며, 그리고 이를 보완, 구체화하는 법령을 필요로 하지 않고 국내의 재판 규범으로서 집행 가능한 것이라는 것, 체결국이 이를 직접 국내 집행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판례가 있다.

京都事件第1審判決・判決の特色 (LIC)

교토 사건 제1심 판결 · 판결의 특색(LIC)

本件判決は、今日までの自動執行型か非自動執行型かという区別によらず、条約の具体的規定（2条1項、6条）が「国家に対し（人種差別的措置をとらないよう）国際法上の義務を負わせるということとどまらず、締結国の裁判所に対し、その名宛人として直接に（人種差別的措置をとらないよう）義務を負わせる規定であると解される。このことから、わが国の裁判所は、人種差別撤廃条約上、法律を同条約の定めに適合するように解釈する義務を負うものというべきである。」としていることが注目される。「条約によって裁判所が条約が保障しようとする価値を考慮すべく義務付けられる」という構成は今まで示されたことがなかった。そのことは、本件条約を裁判規範として機能させるに近くなるが、類型的には個人の権利救済に係る法律の解釈の中において条約が保障しようとする価値を考慮する判決といえよう。

본건 판결은 지금까지 자동집행형인지 비자동집행형인지의 구별에 관계없이, 협약의 구체적 규정(2조1항, 6조)이 “국가에 대하여(인종차별적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국제법상의 의무를 지게 할 뿐만이 아니라, 체약국의 법원에 대하여 그 수신인으로서 직접(인종차별적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의무를 지게 하는 규정이라고 해석된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 법원은 인종차별철폐협약상, 법률을 동 조약 규정에 적합하도록 해석할 의무를 지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협약에 의해 법원이 협약이 보장하고자 하는 가치를 고려할 것이 의무화된다”라는 구성은 지금까지 제시된 적이 없었다. 이 점은 본건 협약을 재판규범으로 기능하게 하는 데 가까워졌지만, 유형적으로는 개인의 권리 구제와 관련된 법률 해석 속에서 협약이 보장하고자 하는 가치를 고려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京都事件控訴審判決判決・国際人権法の適用関係 교토 사건 항소심 판결 · 국제인권법 적용 관계

「人種差別撤廃条約は、国法の一形式として国内法的効力を有するとしても、その規定内容に照らしてみれば、国家の国際責任を規定するとともに、憲法13条、14条1項と同様、公権力と個人との関係を規律するものである。すなわち、本件における被控訴人と控訴人らとの間のような私人相互の関係を直接規律するものではなく、私人相互の关系到適用又は類推適用されるものでもないから、その趣旨は、民法709条等の個別の規定の解釈適用を通じて、他の憲法原理や私的自治の原則との調和を図りながら実現されるべきものであると解される。

“인종차별철폐협약은 국법의 한 형식으로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국가의 국제적 책임을 규정함과 동시에 헌법 13조, 14조 1항과 마찬가지로 공권력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다. 즉, 본건에서 피항소인과 항소인들의 관계와 같은 사인(私人) 상호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것이 아니며, 사인 상호관계에 적용 또는 유추 적용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취지는 민법 709조 등 개별 규정의 해석 적용을 통해 다른 헌법 원리와 사적 자치의 원칙과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해석된다

京都事件控訴審判決判決・国際人権法の適用関係 교토 사건 항소심 판결 · 국제인권법 적용 관계

したがって、一般に私人の表現行為は憲法 21 条 1 項の表現の自由として保障されるものであるが、私人間において一定の集団に属する者の全体に対する人種差別的な発言が行われた場合には、上記発言が、憲法 13 条, 14 条 1 項や人種差別撤廃条約の趣旨に照らし、合理的理由を欠き、社会的に許容し得る範囲を超えて、他人の法的利益を侵害すると認められるときは、民法 709 条にいう「他人の権利又は法律上保護される利益を侵害した」との要件を満たすと解すべきであり、これによって生じた損害を加害者に賠償させることを通じて、人種差別を撤廃すべきものとする人種差別撤廃条約の趣旨を私人間においても実現すべきものである。」

(一般的な間接適用を明示)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인의 표현 행위는 헌법 21조 1항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되는 것이나 사인 사이에서 일정한 집단에 속하는 자의 전체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행해진 경우에는 상기 발언이 헌법 13조, 14조 1항과 인종차별철폐협약의 취지에 비추어 합리적 이유가 결여되고 사회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으며 타인의 법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법 70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했다”는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해석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에게 배상하게 함으로써 인종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는 인종차별철폐협약의 취지를 사인 사이에서도 실현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간접 적용을 명시)

京都事件控訴審判決・損害が高額になる理由①

교토 사건 항소심 판결・손해가 고액이 된 이유 ①

「被控訴人が本件活動により被った無形損害を金銭評価するに当たっては，被控訴人が受けた被害の内容・程度，被控訴人の社会的地位，侵害行為である本件活動の内容・態様その他の諸般の事情を勘案しなければならない。

“피항소인이 본건 활동에 의해 입은 무형 손해를 금전 평가할 때에는 피항소인이 입은 피해의 내용・정도, 피항소인의 사회적 지위, 침해 행위인 본건 활동의 내용・양태 기타 제반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

そこで検討すると、被控訴人は、昭和28年に認可された学校法人であり、朝鮮人教育や一般文化啓蒙事業を行うことを目的とし、本件学校等を設置・運営して在日朝鮮人の民族教育を行っていたこと、本件学校を含む朝鮮学校は、全国に約120校、生徒数は約1万2000人を数え、民族教育を軸に据えた学校教育を実施する場として社会的評価が形成されていること（甲152, 153, 191）、被控訴人は、本件活動により、学校法人としての存在意義、適格性等の人格的利益について社会から受ける客観的評価を低下させられたこと、本件学校の教職員等の関係者が受けた心労や負担も大きかったこと、本件活動により、本件学校における教育業務を妨害され、本件学校の教育環境が損なわれただけでなく、我が国で在日朝鮮人の民族教育を行う社会環境も損なわれたことなどを指摘することができる。」

이에 검토하면, 피항소인은 쇼와28년(1953)에 인가 받은 학교법인으로 조선인 교육과 일반 문화 계몽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본건 학교 등을 설치·운영하며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던 점, 본건 학교를 포함한 조선학교는 전국에 약 120개교, 학생수는 약 1만2천명으로 민족 교육을 축으로 한 학교교육을 실시하는 곳으로 사회적 평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갑 152, 153, 191), 피항소인은 본건 활동에 의해 학교법인으로서의 존재 의의, 적격성 등의 인격적 이익에 대해 사회로부터 받은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켰다는 점, 본건 학교의 교직원 등 관계자가 받은 심적 피로와 부담도 컸다는 점, 본건 활동에 의해 본건 학교의 교육 업무를 방해 받고, 본건 학교의 교육 환경이 손상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사회 환경도 손상됐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京都事件控訴審判決・損害が高額になる理由②

교토 사건 항소심 판결・손해가 고액이 된 이유 ②

被控訴人は、控訴人らの上記行為によって民族教育事業の運営に重大な支障を来しただけでなく、被控訴人は理不尽な憎悪表現にさらされたもので、その結果、業務が妨害され、社会的評価が低下させられ、人格的利益に多大の打撃を受けており、今後もその被害が拡散、再生産され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べきである。また、事件当時、本件学校には134名の児童・園児が在籍していたが、各児童・園児には当然のことながら何らの落ち度がないにもかかわらず、その民族的出自の故だけで、控訴人らの侮蔑的、卑俗的な攻撃にさらされたものであって（児童らが不在であった場合であっても、事件の状況を認識し、又は認識するであろうことは容易に推認できる。）、人種差別という不条理な行為によって被った精神的被害の程度は多大であったと認められ、被控訴人は、それら在校生たちの苦痛の緩和のために多くの努力を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損害が高額になる理由を事案に即したものとした

피항소인은 항소인들의 상기 행위로 인해 민족교육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피항소인은 불합리한 증오 표현에 노출됐으며, 그 결과 업무를 방해 받고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 인격적 이익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으며 앞으로도 그 피해가 확산, 재생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 또한 사건 당시 본건 학교에는 134명의 아동·원아가 재적해 있었는데 각 아동·원아에게는 당연히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민족적 출신을 이유로 항소인들의 모멸적이고 비속적인 공격에 노출됐으며(아동들이 부재한 경우라도 사건의 상황을 인식하거나 또는 인식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추정할 수 있다), 인종차별이라는 부조리한 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매우 컸다고 인정되므로, 피항소인은 이들 재학생들의 고통 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손해가 고액이 된 이유를 사안에 의거한 것이라고 함.

徳島県教組襲撃事件（徳島事件）

도쿠시마현 교조 습격사건(도쿠시마 사건)

- 徳島県教組は、日教組のキャンペーン（どぶ太カンパ）の一環として、「外国籍など恵まれない子供への援助」などの目的を掲げ、組合員（学校の先生）からカンパを集めた。なお、集められたカンパの約半額は「あしなが基金」に渡りますという説明もあった。同教組は、カンパで集まった150万円を、四国朝鮮初中級学校に渡した。被害者Aさん（書記長）が同校学校長に目録を手渡し写真が報道された。
- 在特会は、Aさんや徳島県教組が「あしなが募金だと偽って、街頭募金で集めたお金を第三者である朝鮮学校に横流しをした詐欺だ」として県教組事務所を襲撃、動画配信。
- 도쿠시마현 교조는 일교조 캠페인(도부타 모금)의 일환으로 “외국 국적 등 어려운 아동 원조” 등의 목적을 내걸고 조합원(학교 선생님)에게 기부금을 모았다. 또한 모금된 기부금의 절반 정도는 ‘아시나가 기금(부모를 잃은 아이를 위한 기금)’에 전달한다는 설명도 있었다. 동 교조는 기부금으로 모인 150만 엔을 시코쿠조선초중급학교에 전달했다. 피해자 A씨(서기장)가 이 학교 학교장에게 목록을 전달하는 사진이 보도됐다.
- 재특회는 A씨와 도쿠시마현 교조가 “아시나가 모금이라고 속이고, 가두 모금으로 모은 돈을 제3자인 조선학교로 빼돌린 사기다”라며 현 교조 사무실을 습격, 실시간 방송했다.

徳島事件第1審判決 被侵害利益 도쿠시마 사건 제1심 판결 피침해이익

「前記（１）アの事実関係によれば，個人被告ら①は，出入口が１か所しかなく，かつ床面積約２８平方メートルと狭い原告組合の事務所内に大勢で侵入し，約１３分間にわたり同事務所に居座り，原告組合の業務に従事していた原告Ｘ１に対し，前記（１）ア（エ）のとおり，拡声器等を用いて執拗に，口々に怒号し，罵声を浴びせるなどするとともに，直接的な暴行を加え，その後も，本件会館前の路上において，拡声器等を用いて，上記のとおり直前まで直接の怒号及び罵声に晒されていた原告Ｘ１に対し，「鳴門の渦潮に沈んでしまえ。海の藻屑と消えろ」などと怒号したものであり，これらの行為により，原告組合の業務が妨害されるとともに，原告Ｘ１の私生活の平穩・人格権が侵害されたものと認められる。

“앞서 기술한(1) 가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개인 피고들①은 출입구가 한 곳밖에 없고 그리고 실내 면적이 28평방미터로 좁은 원고 조합의 사무실 안에 여러 명이 침입해 약 13분간에 걸쳐 사무실에 주저앉아 원고 조합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원고X1에 대해 앞선(1)가(다)와 같이 확성기 등을 이용해 집요하게 고함을 치거나 욕설을 퍼붓는 등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고 그 후에도 본건 회관 앞 노상에서 확성기 등을 이용해 위와 같이 직전까지 직접적인 고함과 욕설에 노출되어 있던 원고 X1에 대해 “나루토해협 소용돌이에 빠져버려라. 바다의 수초랑 사라져라”라는 등의 고함을 쳤으며 이들 행위에 의해 원고 조합의 업무가 방해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 X1의 사생활의 평온・인격권이 침해당했다고 인정된다.

徳島事件第1審判決 被侵害利益 도쿠시마 사건 제1심 판결 피침해이익

また、これに加え、インターネットを通じて本件動画①が公開されたことによって、原告 X 1 の私生活の平穏・人格権が更に侵害されるとともに、上記のと通りの怒号及び罵声に晒されている原告 X 1 の姿が不特定多数の者に公開され、原告 X 1 の名誉が毀損されたものと認められる

또한 이에 더해 인터넷을 통해 본건 동영상①이 공개되면서 원고 X1의 생활의 평온・인격권이 더욱 침해됨과 동시에 위와 같은 고함과 욕설에 노출된 원고 X1의 모습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원고 X1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인정된다.

徳島事件第1審判決 人種差別ではない 도쿠시마 사건 제1심 판결 인종차별이 아니다

「ところで、原告らは、本件抗議活動①が人種差別的的思想に基づく憎悪に満ちた悪質な行為であると主張するが、被告 Y 1 会及び個人被告ら①が人種差別的的思想を持っているかどうか及び本件抗議活動①の動機として個人被告ら①の人種差別的的思想に由来するかどうかはともかくとして、本件抗議活動①は、前記（1）アのとおり、攻撃の主たる対象は原告組合及び原告 X 1 であり、その内容も、原告組合が本件支援を行ったことに対する批判、原告組合が政治活動を行っていることに対する批判、原告組合ないし日教組の考え方に対する批判、北朝鮮当局や朝鮮学校に対する批判等を内容とするものにとどまり、朝鮮人に対する差別を直接的に扇動・助長するような内容まで伴っているとはいいい難く、本件抗議活動①それ自体をもって、人種差別的的思想が発現したとはいえないから、原告らの上記主張は採用することができない。」

“그런데 원고들은 본건 항의활동①이 인종차별적 사상에 기반한 증오에 찬 악질적인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피고 Y1 모임 및 개인 피고들①이 인종차별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및 본건 항의활동①의 동기로 개인 피고들①의 인종차별적 사상에 유래하는지는 놔두고 본건 항의활동①은 앞에서 기술한 (1) 가와 같이 공격의 주된 대상은 원고 조합 및 원고 X1이며, 그 내용도 원고 조합이 본건 지원을 한 것에 대한 비판, 원고 조합이 정치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비판, 원고 조합 내지는 일교조의 사고방식에 대한 비판, 북한 당국과 조선학교에 대한 비판 등을 내용으로 하는데 그치며, 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직접적으로 선동·조장하는 듯한 내용까지 동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본건 항의활동① 그 자체를 가지고 인종차별적 사상이 발현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상기 주장은 채택할 수 없다.”

徳島事件控訴審判決 人種差別であることの認定①

도쿠시마 사건 항소심 판결 인종차별임을 인정①

「我が国が加入する人種差別撤廃条約は、「人種差別」について「人種，皮膚の色，世系又は民族的若しくは種族的出身に基づくあらゆる区別，排除，制限又は優先であって，政治的，経済的，社会的，文化的その他のあらゆる公的生活の分野における平等の立場での人権及び基本的自由を認識し，享有し又は行使することを妨げ又は害する目的又は効果を有するもの」と定義し（1条1項）」

“우리나라가 가입한 인종차별철폐협약은 ‘인종차별’에 대해 ‘인종, 피부색, 혈통 및 민족 혹은 종족적 출신에 기초한 모든 구별, 배제, 제한 또는 우선하는 것으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타 모든 공적생활 분야에서 평등의 입장에서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인식하고, 향유하고 또는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갖는 것’이라고 정의하고(1조 1항)”

徳島事件控訴審判決 人種差別であることの認定①

도쿠시마 사건 항소심 판결 인종차별임을 인정①

「この人種差別撤廃条約は、国法の一形式として国内法的効力を有するものの、その規定内容に照らしてみれば、国家の国際責任を規定するとともに、憲法13条、14条1項と同様、もっぱら公権力と個人との関係を規律するものであり、私人相互の関係を直接規律することを予定するものではない。しかし、その趣旨は、本件事案において民法709条等の実定法を解釈適用するに当たっても、十分に留意、尊重しなければならない。即ち、人種差別を撤廃すべきものとする人種差別撤廃条約の趣旨は、条約が「人種差別」として禁止し終了させる措置を求める行為の悪質性を基礎付けることになり、当該不法行為の違法性、非難可能性の程度を評価するにあたって十分に考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

“인종차별철폐협약은 국법의 한 형식으로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국가의 국제적 책임을 규정함과 동시에 헌법 13조, 14조 1항과 마찬가지로 공권력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사인(私人) 상호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취지는 본건 사안에서 민법 709조 등의 실정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도 충분히 유의, 존중해야 한다. 즉, 인종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는 인종차별철폐협약의 취지는 협약이 ‘인종차별’로 금지하고 종료시키는 조치를 요구하는 행위의 악질성을 기초로 한 것으로, 해당 불법행위의 위법성,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평가하는 데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徳島事件控訴審判決 人種差別であることの認定②

도쿠시마 사건 항소심 판결 인종차별임을 인정②

「第1審被告らの本件各示威行動等やその映像をインターネット上に公開する行為は、(2)のとおり、第1審被告らが差別の対象とする在日朝鮮人らを支援する者は第1審被告らから攻撃を受け、様々な被害を蒙るということを広く知らせ、その支援活動に萎縮効果をもたらすことを目的としたものであり、前記認定事実のとおり、本件各示威行動等が行われ、その映像がインターネット上で公開された後、第1審原告組合の事務所に嫌がらせ電話が殺到し、ニコニコ動画にアップロードした動画には視聴者による夥しい数の第1審原告らを非難中傷するコメントが書き込まれたことから、その目的に沿う効果があったことは容易に推認できるところであり、人種差別撤廃条約1条に定義する、少数者の「平等の立場での人権及び基本的自由を認識し、享有し又は行使することを妨げ又は害する目的又は効果を有するもの」に該当し、強い非難に値し、違法性の強いものというべきである。」

“제1심 피고들의 본건 각 시위 행동 등과 그 영상을 인터넷상에 공개하는 행위는 (2)와 같이 제1심 피고들이 차별의 대상으로 하는 재일조선인들을 지원하는 자는 제1심 피고들에게 공격을 받아 여러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널리 알려, 그 지원활동에 위축효과를 초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앞에서 기술한 인정 사실대로 본건 각 시위 행동 등이 행해지고 그 영상이 인터넷상에서 공개된 후 제1심 원고 조합의 사무실에 괴롭힘 전화가 쇄도하고, 니코니코동영상에 업로드한 동영상에는 시청자에 의한 엄청난 수의 제1심 원고들을 비난 중상하는 댓글이 달린 것으로부터 그 목적에 따른 효과가 있었음을 쉽게 추정할 수 있으며,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조에서 정의한 소수자의 ‘평등의 입장에서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인식하고, 향유하며 또는 행사하는 것을 방해 또는 해할 목적 또는 효과를 갖는 것’에 해당하므로 강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며 위법성이 강하다고 봐야 한다.”

徳島事件控訴審判決 原告に寄り添った被害認定 도쿠시마 사건 항소심 판결 원고에게 다가선 피해 인정

「以上のとおり，日教組が取り組んだ「子ども救援カンパ」活動により集められたカンパ金を原資として，連合が四国朝鮮初中級学校への支援金150万円を助成したことについては，手続，カンパ活動の趣旨や支援の目的等に照らして，何らの問題もなく，第1審被告Y1らは，充分な事実関係の調査確認もしないまま，未必的ともいうべき誤解の下に，第1審原告組合への示威・街宣活動を企画提案したものである。」

“이상과 같이 일교조가 실시한 ‘어린이 후원 모금’ 활동에 의해 모인 기부금을 원자(原資)로 하여 렌고(連合)가 시코쿠조선초중급학교에 대한 지원금 150만 엔을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절차, 모금 활동의 취지와 지원의 목적 등에 비추어 아무런 문제도 없으며, 제1심 피고 Y1들은 충분한 사실관계를 조사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미필적이라고 할 만한 오해 하에 제1심 원고 조합에 대한 시위・가두활동을 기획 제안한 것이다”

刑事訴訟について当初からあった疑問 형사소송에 대해 처음부터 들었던 의문

- 検察官が真剣に朝鮮人のために闘ってくれるのか？
- 名誉毀損で告訴した場合に230条の2がネック
真実性、真実相当性をめぐる被告人（弁護人）と検察官の応酬は、あたかも、歴史修正主義者とそれをただす者のたたかいの様相になるであろう。
そんな役回りを検察官がしてくれるのか？？
- 검찰이 진정으로 조선인을 위해 싸워줄 것인가?
-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할 경우에 230조 2항이 장애
진실성, 진실상당성을 둘러싼 피고인(변호인)과 검찰의 응수는 마치 역사수정주의자와 이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다투는 양상이 될 것이다.
그런 역할을 검사가 해 줄 것인가??

やはり、名誉毀損が起訴されない 역시, 명예훼손이 기소되지 않았다

- 京都事件では、被害者（学校法人、学校）は、被告人らを、
威力業務妨害、器物損壊、名誉毀損で告訴
↓
- 起訴されたのは
威力業務妨害、器物損壊、侮辱
- 徳島事件でも、被害者は告訴人らを名誉毀損でも告訴していた
↓
- こちらは名誉毀損は全く起訴されなかった
↓
- 被害者は名誉毀損の不起訴について検察審査会にはかった
→不起訴不相当の議決 しかし検察は起訴せず。

- 교토 사건에서는 피해자(학교법인, 학교)는 피고인들을
위력업무방해, 기물손괴, 명예훼손으로 고소
↓
- 기소된 것은
위력업무방해, 기물손괴, 모욕
- 도쿠시마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고소인들을 명예훼손으로도 고소했다
↓
- 이 사건에서는 명예훼손은 전혀 기소되지 않았다
↓
- 피해자는 명예훼손 불기소에 대해 검찰심사회에 자문 신청
→불기소 불상당 결의, 그래도 검찰은 기소하지 않음

判決に『人種差別』の文字がない 판결에 ‘인종차별’ 표현이 없다

主犯らは、威力業務妨害罪等にしては重い量刑の判決を受けたが、理由中に「人種差別」の文字が出てこないし、事案が人種差別にあたるのかどうかの検討がなされない。

∴ 事案が人種差別に該当するのだという主張立証を検察官が全くしなかったから
(当然そうなる)

主犯들은 위력업무방해 등에 비하면 무거운 형량의 판결을 받았지만, 이유 중에 ‘인종차별’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았으며 사안이 인종차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 사안이 인종차별에 해당한다는 주장 입증을 검찰이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됨)

京都事件主犯による名誉毀損事件2017.4.23発生 刑事訴訟 公訴事実 교토 사건 주범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2017.4.23발생 형사소송 공소사실

- 「ちょっと前までね、ここ、空き地になってるでしょ。ここにね、日本人を拉致した朝鮮学校が、あったんですね。」、
 - 「日本人を拉致するような学校は叩き出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れは、皆さんの子ども達が拉致されるからです。」、
 - 「ここ何年か前まであった京都の朝鮮学校ってありますよね、この朝鮮学校は、日本人を拉致しております。」、
 - 「警察庁にも認定されて、その朝鮮学校の校長ですね、日本に拉致した、国際指名手配されております。」
-
-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 공터가 됐죠. 여기에 말이죠 일본인을 납치한 조선학교가 있었습니다.”,
 - “일본인을 납치하는 학교는 내쫓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납치되기 때문입니다.”,
 - “최근 몇 년 전까지 있었던 교토 조선학교가 있었잖아요. 이 조선학교는 일본인을 납치하고 있습니다.”,
 - “경찰청에서도 인정한 그 조선학교 교장말이죠, 일본에 납치한, 국제지명수배 되어 있습니다.”,

京都事件主犯による名誉毀損事件2017.4.23発生 刑事訴訟 公訴事実 교토 사건 주범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2017.4.23발생 형사소송 공소사실

「50年間、不法占拠してねここ、ここ綺麗なる前、ねえ日本人の子どもが遊べないように、朝鮮学校の関係者がやりたい放題やっていた。これを、我々が、ええ排除しました。ね、皆さん、自分の、ね、子どもを誘拐されんように、朝鮮学校関係者に拉致されんようにね、気をつけてくださいね。」、

- 「この勧進橋公園の横に、その拉致した実行犯のいる朝鮮学校がありました。」、
- 「朝鮮学校関係者かなと思ったら110番してください皆さん。これは日本人拉致しとんですからね。」
- “50년 동안 불법점거하고 여기, 여기 깨끗해지기 전에, 일본인 아이들이 놀지 못하게 조선학교 관계자가 하고 싶은 대로 했었죠. 이것을 우리들이 배제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가 유괴되지 않도록, 조선학교 관계자한테 납치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 “여기 간진바시공원 옆에 납치한 실행범이 있는 조선학교가 있었습니다.”,
- “조선학교 관계자다 싶으면 110번에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 일본인을 납치했으니까요.”

名誉毀損事件刑事訴訟 公判廷の様子

명예훼손 사건 소송 공판정 모습

- 弁護側と検察側で立証の厚さが明らかに異なっていた
検察側・・・甲23号証まで
弁護側・・・弁158号証まで
- 弁護人請求証拠の多くはヘイト本であったり裏取りの一切ない産経新聞の飛ばし記事であったり公安調査庁の報告であったり、あたかも被害者が反社会的存在で国家による監視対象であるかのような印象を与えるもの
→これに対して検察官が何の反論もしないので裁判所はこれに引きずられた可能性が考えられる。
- 변호 측과 검찰 측에서 입증한 깊이가 확연히 달랐다
검찰 측・・・갑23호증까지
변호 측・・・변158호증까지
- 변호인 청구 증거의 대부분은 험한 책이거나 근거가 전혀 없는 산케이신문의 날조 기사거나公安조사청의 보고이거나, 마치 피해자가 반사회적 존재로 국가에 의한 감시 대상인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
→이에 대해 검사가 아무런 반론도 하지 않아서 법원은 이것에 끌려갔을 가능성이 있다.

名譽毀損事件刑事訴訟 公判廷での攻防 명예훼손 사건 형사소송 공판정에서의 공방

- 弁護側冒頭陳述、被告人質問において被告人の主張の独壇場になる。予断偏見に基づくひどい事実誤認を多数含んだものであったので法廷は不穏な雰囲気になるが、柵の内側の当事者誰もが訂正をしようとしな。悪夢のような時間であった。
- それでも検察官は懲役 1 年 6 か月を求刑
(被告人は刑期明けまもなく本件を起こしたので執行猶予付き判決の余地がなかった)

⇒「公益目的」 罰金 50 万円の判決

被告人のみ控訴 検察官は控訴せず 控訴審で原審維持

- 변호사 측 모두진술, 피고인 질문에서 피고인 주장의 독무대가 됐다. 예단 편견에 근거한 심각한 사실 오인을 다수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정엔 험악한 분위기가 됐지만, 법정 안 쪽 당사자 누구도 정정하려 하지 않았다. 악몽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 그래도 검사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
(피고인은 형기 종료 직후 본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집행유예 판결의 여지가 없었다)

⇒'공익목적' 벌금 50만엔 선고

피고인만 항소 検사는 항소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ネット上のヘイトが刑事手続に（名誉毀損以外で） 인터넷상의 혐오 표현이 형사 절차로 (명예훼손 외에)

- 2018년 12월 27일 川崎簡裁 60대男性 中学生に「悪性外来寄生生物 人もどき」侮辱罪で科料 9, 0 0 0 円 (中根寧生さん)
- 2019년 12월 27일 川崎簡裁略式 藤沢市51歳男性 神奈川県迷惑行為防止条例違反 (つきまとい等の禁止) の罪 30万円 (崔江以子さん) 男性は脅迫で一度不起訴になっていた。 <https://www.asahi.com/articles/ASMDW52T4MDWULOB00L.html>

2018년 12월 27일 가와사키 간이재판소, 60대 남성이 중학생에게 ‘악성 외래 기생 생물종’, 모욕죄로 벌금 9천엔(나카네 네오 씨)

2019년 12월 27일 가와사키 간이재판소 약식, 후지사와시 51세 남성이 가나가와현 민폐행위방지조례 위반(스토킹 등의 금지)의죄 30만엔(최강이자 씨), 남성은 협박으로 한 번 불기소 됐다.

<https://www.asahi.com/articles/ASMDW52T4MDWULOB00L.html>

ネット上のヘイトが刑事手続に（名誉毀損以外で） 인터넷상의 혐오 표현이 형사 절차로 (명예훼손 외에)

2020年12月3日横浜地裁川崎支部 川崎市ふれあい館への脅迫葉書が威力業務妨害罪、元川崎市職員に懲役1年の実刑（館長：崔江以子さんが被害者の意見陳述（法292条の2）

名誉毀損以外で立件されれば、手続は比較的スムーズであり
検事も被害者に寄り添っている印象がある（私見）

2020년 12월 3일 요코하마 지방재판소 가와사키지부 가와사키시 후레아이관에 대한 협박
엽서가 위력업무방해죄, 전 가와사키시 직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관장:최강이자 씨가
피해자 의견 진술(법 292조의 2))

명예훼손 이외로 입건되면, 절차는 비교적 원활하고 검사도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인상이 있다(사건)

人種差別事案が刑事手続にマッチしない構造的問題

인종차별 사안이 형사 절차에 맞지 않는 구조적 문제

- 名誉棄損罪には被害者参加の制度がないので、被害者（代理人）が検察官なり裁判所なりにコミットするルートがない
- 人種差別事案では被害者がマイノリティであるのが特徴

マイノリティの利益が国家の利益と必ずしも合致しないので、公益の代表者たる検察官が被害者に寄り添った真剣な訴訟追行をしていないのではないかの疑念（cf 朝鮮総連は破壊活動防止法に基づく公安調査庁の調査対象団体）

⇒検察官が国家権力であることからくるジレンマ。

日本は、国内人権機関、個人通報制度 いずれももたな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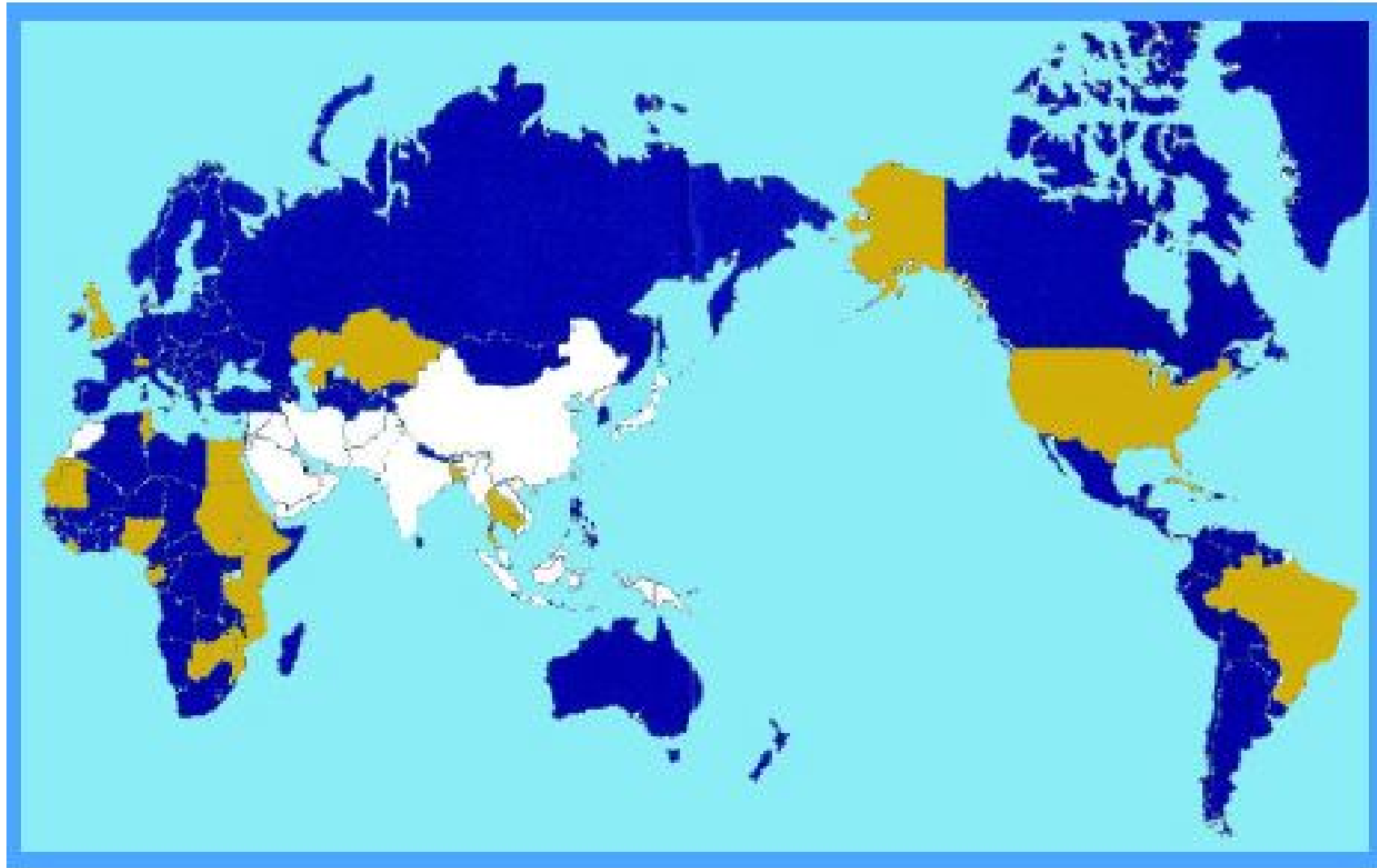
- 명예훼손죄에는 피해자 참가 제도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대리인)가 검사나 법원에 관여할 통로가 없다
- 인종차별 사안에서는 피해자가 마이너리티인 것이 특징

마이너리티의 이익이 국가의 이익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진지한 소송추행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의심(cf 조선총련은 파괴활동방지법에 근거한公安조사청의 조사대상 단체)

⇒검사가 국가권력이라는 점에서 오는 딜레마.

일본은 국내 인권기관, 개인통보제도 모두 없다

個人通報制度批准国MAP 개인통보제도 비준국 MAP



- =自由権規約第1選択議定書批准国(ヨーロッパ、カナダなど)
- =その他の個人通報制度等採用国(アメリカ、イギリスなど)
- =個人通報制度を持たない国(日本、中国、北朝鮮など)

자유권규약제1선택의정서 비준국(유럽, 캐나다 등)
기타 개인통보제도등 채용국(미국, 영국 등)
개인통보제도를 갖지 않는 나라(일본, 중국, 북한 등)

대한변호사협회-일본변호사연합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공동 세미나(제2차)
大韓弁護士協會-日本弁護士連合会 国際人権特別委員会共同セミナー(第2回)

토론문: 한일의 인종 차별 관련 국제인권규범 적용 사례와 그 시사점

コメント: 日韓の人種差別関連国際人権条約の 適用例とその示唆点

2021. 11. 24.

이상현 변호사
(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위원)
イ・サンヒョン 弁護士
(大韓弁協難民移住外国人特別委員会委員)

목차

目次

1. 관련 한국 사례 소개 (1) - 영화 <청년경찰> 사건
 2. 관련 한국 사례 소개 (2)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사건
 3. 관련 한국 사례 소개 (3) - 혐오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양형
-
1. 韓国の関連事例の紹介 (1) - 映画『ミッドナイトランナー』
(原題: 青年警察) 事件
 2. 韓国の関連事例の紹介 (2) - ソウル市学生人権条例事件
 3. 韓国の関連事例の紹介 (3) - ヘイトクライムに対する加重処罰と量刑

1. 영화 <청년경찰> 사건

1. 映画『ミッドナイトランナー』事件 (原題; 青年警察)

1. 영화 <청년경찰> 사건

1. 映画『ミッドナイトランナー』事件

■ 사건의 개요

- 영화 <청년경찰>은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를 부정적으로 묘사함(장기매매, 납치 등). 영화는 “여기 조선족들만 사는데 여권 없는 중국인도 많아서 밤에 칼부림이 자주 나요. 경찰도 잘 안 들어와요. 웬만하면 밤에 다니지 마세요.”와 같이 사실과 다르며, 혐오정서를 조장하는 대사를 포함하고 있음.
- 조선족 동포 등은 위 영화가 인종차별적 혐오표현물에 해당한다며,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

■ 事件の概要

- 映画『ミッドナイトランナー』(原題:青年警察)は、韓国に在留する中国国籍の朝鮮族同胞を否定的に描写している(臓器売買、拉致等)。映画は「ここには朝鮮族しかいませんが、旅券のない中国人も多くて夜には刃物沙汰がよく起きます。警察も滅多に入って来ません。なるべく夜には入らない方がいいですよ」と、事実とは異なりヘイト情緒を助長する台詞を含んでいる。
- 朝鮮族同胞らは、上記映画が人種差別的ヘイト表現物に当たるとし、映画製作会社を相手に損害賠償請求訴訟を起こした。

1. 영화 <청년경찰> 사건

1. 映画『ミッドナイトランナー』事件

■ 관련 인종차별철폐협약 규정

- 제4조: 인종적 증오와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증진시키려고 시도하는 모든 선전과 모든 조직을 규탄하며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약국의 의무
- 제6조: 차별의 결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 또는 변제를 구하는 권리를 만인에게 보증할 계약국의 의무
- 제7조: 문화 등에 있어서 인종차별을 초래하는 편견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계약국의 의무

■ 関連人種差別撤廃条約の規定

- 第4条: 人種的憎悪及び人種差別を正当化し若しくは助長することを企てるあらゆる宣伝及び団体を非難し、これを根絶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迅速かつ積極的な措置をとる締約国の義務
- 第6条: 差別の結果として被ったあらゆる損害に対し、公正かつ適正な賠償又は救済を当該裁判所に求める権利をすべての者に対し確保する締約国の義務
- 第7条: 文化等において人種差別につながる偏見に対し、迅速かつ効果的な措置をとる締約国の義務

1. 영화 <청년경찰> 사건

1. 映画『ミッドナイトランナー』事件

- 법원의 판단(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7가단5245081 판결)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6조 등에 근거해서 곧바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민법에 따라 청구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음.
 - ‘국제협약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보았음.
 - 법원은 (1) 제작자의 악의적 의도가 없고, (2) 영화가 관객에게 주는 혐오적 인상이 조선족 집단에 대한 것이기 보다는 특정 개인이나 상황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음.
- 裁判所の判断(ソウル中央地方裁判所2018. 9. 14.宣告2017ワ単5245081判決)
 - 「人種差別撤廃条約第6条等に基づいて直ちに損害賠償請求権が認められるものではなく、民法に従って請求を判断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た。
 - 「国際条約の『趣旨』は十分に考慮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が、損害賠償責任が成立するか否かは別途判断が必要な問題」とした。
 - 裁判所は、(1)製作者に悪意はなく、(2)映画が観客に与える憎悪的な印象が朝鮮族集団に対するものというよりも、特定の個人や状況に対するものであるとの理由で、請求を棄却した。

1. 영화 <청년경찰> 사건

1. 映画『ミッドナイトランナー』事件

■ 생각해볼 점

- 위 판결은 사실상 국제인권조약을 국내법의 해석기준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이러한 한국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법률을 인종차별철폐협약에 적합하도록 해석할 책무를 진다'고 본 일본 법원(예컨대 교토사건 제1심 판결)의 판단과 대비됨.
- 위 판결은 영화상의 표현이 '영화적 허구'라는 점에 주목하였음. 일본 법원은 인종차별적 영화나 소설 등의 창작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考えるべき点

- 上記判決は事実上、国際人権条約を国内法の解釈基準として認めないものと評価できる。このような韓国の裁判所の判断は、「裁判所は法律を人種差別撤廃条約に適合するように解釈する責務を負う」とした日本の裁判所(例えば京都事件1審判決)の判断と対比される。
- 上記判決は、映画における表現が「映画的虚構」であるという点に注目した。日本の裁判所は人種差別的映画や小説等の創作物についてどのように判断すると予想されるか伺いたい。



2.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사건

2. ソウル市学生人権条例事件

2.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사건

2. ソウル市学生人権条例事件

■ 사건의 개요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성별, 종교,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학생의 권리를 규정하면서, '교직원과 학생은 차별적 언어나 행동, 혐오적 표현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 일부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가 위 조례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事件の概要

- ソウル市学生人権条例は性別、宗教、人種等を理由に差別されない学生の権利を規定する際に、「教職員と学生は差別的な言辞や行動、ヘイトスピーチによって他者の人権を侵害してはならない」と規定した。
- 一部の教職員と学生、保護者が上記条例は表現の自由等を侵害しており違憲であると主張し、憲法裁判所に憲法訴願審判を請求した。

2.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사건 2. ソウル市学生人権条例事件

- 피청구인 서울시교육청 측의 합헌주장(혐오표현 금지의 합헌성)
 - 인종차별 및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인권규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및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의 견해 등을 근거로 제시함.
 - 일본의 '헤이트스피치 억제법', '오사카시 헤이트스피치 대처에 관한 조례'도 근거로 제시함.
- 被請求人ソウル市教育庁側の合憲の主張(ヘイトスピーチ禁止の合憲性)
 - 人種差別及びヘイトスピーチに関する国際人権条約、国連人種差別撤廃委員会及び国連自由権規約委員会の見解等を根拠として提示。
 - 日本の「ヘイトスピーチ解消法」「大阪市ヘイトスピーチへの対処に関する条例」も根拠として提示。

2.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사건

2. ソウル市学生人権条例事件

■ 헌법재판소의 판단(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7헌마1356 결정)

- '아동이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 보호되도록 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유엔 아동권리협약도 학교 내 혐오표현금지 규정의 법률적 근거가 됨.

(주: 위 조례에 대한 법률적인 위임근거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그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함.)

-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인격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함.

- 혐오표현은 자유로운 토론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공론장에서 허용되는 표현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민주적 의사형성의 보호를 위해서도 제한이 불가피함.

■ 憲法裁判所の判断(憲法裁判所2019. 11. 28. 宣告2017憲マ1356決定)

- 「児童があらゆる形態の差別から保護されるようにするすべての適切な措置をとるべき国家の義務」を定めた国連子どもの権利条約も、校内ヘイトスピーチ禁止規定の法律的根拠となった。

(注:上記条例に対する法律的な委任根拠があるのか否かが争点になったが、憲法裁判所は国連子どもの権利条約がその法的根拠になりうると判断した。)

- ヘイトスピーチを禁止することは憲法上、人間の尊厳性(人格権)を保障するために必要。

- ヘイトスピーチは自由な討論を基盤とする民主主義の公論の場で許される表現の限界を越えており、民主的な意思形成の保護のためにも制限は不可避。

2.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사건

2. ソウル市学生人権条例事件

■ 생각해볼 점

- '법률유보의 원칙'의 판단에 있어서 국제인권규범이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함.
- 혐오표현의 금지가 개개인의 인권(기본권)을 위한 것인 동시에, 건강하고 민주적인 공론장의 형성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함.
- 일본에서도 혐오표현 금지의 위헌 여부를 '기본권 충돌'의 관점이 아니라, '공익적 필요를 위한 표현의 자유 제한'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있는지?

■考えるべき点

- 「法律留保の原則」の判断において国際人権条約が法律的根拠になりうると判断した。
- ヘイトスピーチの禁止が個々人の人権(基本権)のためのものであると同時に、健康で民主的な公論の場を形成するためのものであると判断した。
- 日本でもヘイトスピーチ禁止の違憲如何について「基本権の衝突」の観点からではなく「公益的な必要性のための表現の自由の制限」の観点から見る見方があるか伺いたい。

- 
- 3. 혐오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양형
 - 3. ヘイトクライムに対する加重処罰と量刑

3. 혐오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양형 3. ヘイトクライムに対する加重処罰と量刑

-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권고(CERD/C/KOR/CO/17-19)
 - '인종차별 선동 및 인종적 동기에 기인한 폭력행위에 대한 형사제재가 없는 것'을 우려함
 - '(1) 형법을 개정하여 인종차별을 범죄의 한 형태로 규정할 것, (2) 인종차별을 범죄화하고 위반의 경중에 비례하여 적절한 처벌을 할 것, (3) 인종차별을 가중처벌 사유로서 고려할 것'을 권고함
 -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양형기준만으로도 혐오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가능하므로, 법률에 별도로 가중처벌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는 입장임.

- 国連人種差別撤廃委員会の大韓民国政府に対する勧告(CERD/C/KOR/CO/17-19)
 - 「人種差別の扇動及び人種的動機に起因する暴力行為に対し刑事制裁がないこと」を憂慮。
 - 「(1)刑法を改正して人種差別を犯罪の一形態として規定すること、(2)人種差別を犯罪化し、違反の軽重に即して適切な処罰をおこなうこと、(3)人種差別を加重処罰事由として考慮すること」を勧告。
 - しかし大韓民国政府は「量刑基準だけでもヘイトクライムに対する加重処罰が可能であるため、法律に別途加重処罰規定をおく必要はない」との立場。

3. 혐오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양형 3. ヘイトクライムに対する加重処罰と量刑

■ 한국의 현황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혐오범죄'를 독자적인 양형 요소로 정하고 있지 않음.
- 대신, 폭력범죄의 양형기준을 예시로 살펴보면, (1)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2)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3)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양형 가중요소로 정하고 있음.
- 그렇다면, 인종차별적 동기에서의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관계가 없음에도 인종을 이유로 한 '묻지마(무동기) 범죄', 취약한 이주민, 난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양형기준의 해석상 가중요소가 인정되어야 함.

■ 韓国の現状

- 大法院量刑委員會の量刑基準は、「ヘイトクライム」を独自の量刑要素として定めていない。
- その代わりに、暴力犯罪の量刑基準を例にとってみると、(1)非難に値する犯行動機、(2)不特定被害者を対象とした犯行、(3)犯行に脆弱な被害者を量刑加重要素と定めている。
- であれば、人種差別的動機からの犯罪、加害者と被害者の間に関係がないにもかかわらず人種を理由におこなわれた「無差別(無動機)犯罪」、脆弱な移住民、難民を対象にした犯罪は量刑基準の解釈上、加重要素が認め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

3. 혐오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양형 3. ヘイトクライムに対する加重処罰と量刑

- 한국의 현황(이어서)

- 하지만 한국 법원은 혐오범죄에 대해 특별히 가중처벌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예컨대,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처음 보는 난민에게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며 폭행을 휘두른 사건에서 법원은 앞서 설명한 양형 가중요소를 언급하지 않았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8. 14. 선고 2018고정494 판결).
-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양형에서 고려한 판결례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韓国の現状(続き)

- しかし、韓国の裁判所はヘイトクライムに対して特別に加重処罰をしていないと見られる。例えば、バス停留所で初めて会った難民に「おまえの国に帰れ」と言いながら暴行を加えた事件で、裁判所は前述した量刑加重要素に言及していない(水源地裁平澤支部2019. 8. 14. 宣告2018い定494判決).
- 人種差別撤廃条約を量刑において考慮した判決例も存在していないものと見られる。

3. 혐오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양형 3. ヘイトクライムに対する加重処罰と量刑

- 생각해볼 점

- 일본의 경우, 혐오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나 양형에서의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 考えるべき点

- 日本の場合、ヘイトクライムに対する加重処罰や量刑への考慮がなされているのか?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